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(장제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791

발의연월일: 2020. 12. 21.

발 의 자:장제원·이명수·김태호

서병수 · 이종배 · 윤상현

구자근・이 용・성일종

김정재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국가공무원법」의 특례를 규정한 현행 「군무원인사법」에서는 군무원의 징계사유를 별도로 규정하면서, 징계의 사유로 「국가공무원법」을 위반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지 않음. 또한 「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」이 제정되어 군무원을 적용범위로 하고 있고, 해당법률에서 군인 및 군무원 등이 준수해야 할 의무 전반에 대해 규정하게되었으므로, 징계사유에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. 이에 군무원이 「국가공무원법」 및 「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」에 따른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징계 대상 행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「국가공무원법」을 참고하여 징계사유를 개정하려는 것임.

또한 징계부가금 미납부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징수하도록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(안 제37조의2제3항),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 구성의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의 직위를 신설하는 등(안 제43조제2항),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군무원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7조제2호 중 "의무"를 "의무(다른 법령에서 군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)"로 한다.

제37조의2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이 경우 체납액의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수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한다.

제43조제2항 중 "항고인보다 상위직에 있는 장교"를 "장교"로 하고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위원 중 군법무관 또는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1명과 일반군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7조(징계사유) 군무원에 대한	제37조(징계사유)
징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	
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한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직무상의 <u>의무</u> 를 위반하거나	2. 직무상의 <u>의무(다른 법령에서</u>
직무를 게을리한 경우	군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
	된 의무를 포함한다)
3. • 4. (생 략)	3.・4. (현행과 같음)
제37조의2(징계부가금) ① ~ ②	제37조의2(징계부가금) ① ~ ②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③ 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	③
과처분을 받은 사람이 납부기간	
내에 그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지	
아니한 때에는 징계권자(징계권	
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	
이하의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인	
경우 그 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	
장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	
다)는 「국세징수법」에 따른	
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	
수 있다. <u>다만, 징계부가금의 체</u>	<u>이 경우 체납액의 징수</u>
납액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	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되는
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	경우에는 징수 대상자의 주소지

장에게 그 징수를 의뢰하여야 한다.

- (생 략)
 - ② 제1항에 따른 군무원항고심 사위원회는 항고인보다 상위직 에 있는 장교·군무원 또는 공 무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 한다. <후단 신설>

③ (생략)

를	관할하는	세무서장에게	징수
를	위탁한다.		

제43조(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) ① 제43조(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

(2)	 	
	 <u>장교</u> -	

---. 이 경우 위원 중 군법무관 또는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1 명과 일반군무원 또는 일반직공 무원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 다.

③ (현행과 같음)